

공	담	당	장	사무국	장	상근부	회장	회	장
람									

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

Jeju

제주특별자치도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제71주년 4·3희생자 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에 따른 휴업·휴무 권고

1. 평소 제주도정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,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우리도에서는 「4·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고, 4.3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4·3희생자 추념식과 4·3주간(3.18 ~ 4.7)에 추념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
3. 이에 따라, 제주도민 모두가 4.3희생자를 추념하고 4.3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날로 삼을 수 있도록 4.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취지에 따라 휴업·휴무를 권고하오니,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제주특별자치도 4.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1부. 끝.

제주특별자치도



수신자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장,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장,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

주무관

강승호

복지정책팀장

강애숙

복지정책과장

전결 2019. 3. 28.

고춘화

협조자

시행 복지정책과-4249

(2019. 3. 28.)

접수 2019-244(2019.3.28)

우 6312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30, (연등)

/ <http://www.jeju.go.kr>

전화번호 064-710-2844

팩스번호 064-710-2819

/ xix9624@korea.kr

/ 대한민국 공개

"친절매너, 질서지키기, 클린 제주만들기"

제주특별자치도 4·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



에 관한 조례

[시행 2019. 3. 26.] [조례 제2229호, 2019. 3. 26., 일부개정]

제주특별자치도 (4.3지원과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4·3희생자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여 제주도민 모두가 함께 4·3희생자를 추념하고 도민화합과 통합을 도모하며, 평화와 인권·화해와 상생의 4·3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고양·전승·실천함으로써 4·3의 해결 및 세계평화의 섬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9.3.26.>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9.3.26.>

1. “4·3희생자추념일”이란 「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」 제2조제1항 별표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.
2. “지방공휴일”이란 「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하는 날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대상)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한다.

1. 제주특별자치도의회
2.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및 하부행정 기관
3. 제주특별자치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
4. 제주특별자치도 합의를행정기관

제4조(지방공휴일의 지정) 제주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이라 한다)는 매년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한다. <개정 2019.3.26.>

제5조(도지사의 책무) ① 도지사는 4.3희생자추념일의 공휴일 지정을 적극 홍보하고 공지하며, 도민 및 기관, 단체 등이 공휴일 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4·3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고양·전승·실천하는 사업들을 발굴, 육성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 <제2229호, 2019. 3. 26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